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순서

□ 5분 자유발언 : 1명

- 김홍섭 의원 :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5분자유발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4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고자 : 강우용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건(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보고자 : 김홍섭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0건
- 보고자 : 신중양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4건
- 보고자 : 구교천 위원장

□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6건



의 사 일 정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9. 9.(수)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제2차 본회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1.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2. 거창군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4.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5.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 4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1 ※ 총무위원회 : 6~15 ※ 산업건설위원회 : 16~19 ※ 총무산업건설위원회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10:00)

5분자유발언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5분자유발언**



김 홍 섭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창의 밤」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어디에서 소비하며,
어떤 기억을 남기고 돌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낮에 잠시 둘러보고 돌아가는 관광만으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낮의 관광을 밤의 체류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창은 이미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승대의 역사와 계곡, 거창창포원의 생태경관,
감악산 별바람언덕의 밤하늘, 월성계곡군립공원의
자연환경, 가조온천 관광지까지 야간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축제와 문화예술,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시설, 로컬푸드와 특산품을 연결한다면
거창의 밤은 새로운 관광경제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2년부터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 성주군은 2024년 군 단위 최초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창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관광은 단순히 밤에 불을 밝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볼거리와 걸을 거리, 머물 거리와 먹을 거리를
함께 만드는 일입니다.

감악산에서는

별과 바람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체험을,

수승대와 월성계곡에서는

자연과 역사를 활용한 야간해설을,

거창 창포원과 황강 수변에서는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가조온천에서는 숙박과 휴식, 치유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저녁까지 거창에 머물면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과 전통시장을 찾게 됩니다.

체류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경제의 기회도
커지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의 기회가 되고,
문화예술인에게는 새로운 무대가 되며,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관광의 목표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를 지역경제와
연결해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과 편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행환경과 교통·주차, 응급대응, 야간 안내체계,
자연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기존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향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야간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주요 관광지를 야간관광 거점으로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점과 숙박업소, 시장과 상점, 로컬푸드와 특산품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야간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 상인과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거창의 밤은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낮의 거창이 자연과 풍경의 거창이라면,
밤의 거창은 체류와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움직이는 거창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거창을 떠나며

“거창은 낮에도 좋지만, 밤이 더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창은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관광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닙니다.

생활 인구와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예술과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지역 활력
정책입니다.

거창의 밤을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밝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갑시다.

거창의 낮과 밤이 함께 빛나는 그날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우 용]

〔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6. 8. 14.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6. 8. 18.
- 상정일자 :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8. 28.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허동현,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나.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른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을 의결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75,468	978,701	810,359	168,342
일반회계	902,294	905,013	751,860	153,153
특별회계	73,174	73,688	58,499	15,189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75,468	983,857	978,701	549	4,607	100.3	99.5
일반회계	902,294	910,031	905,013	535	4,483	100.3	99.4
공기업 특별회계	43,019	42,722	42,623	12	87	99.1	99.8
기타 특별회계	30,155	31,104	31,065	2	37	103.0	99.9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36,942	138,526	975,468	810,359	119,812	4,060	41,237
일반회계	775,698	126,596	902,294	751,860	109,131	4,039	37,264
공기업 특별회계	34,586	8,433	43,019	34,821	6,333	0	1,865
기타 특별회계	26,658	3,497	30,155	23,678	4,348	21	2,108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 이 용 : 해당사항 없음

☐ 전 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전용액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6건			170	
경제기업과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행사지원금	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 체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무관리비	3	
행복나눔과	아동관련 활동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사무관리비	1	
행복농촌과	거창 별바람언덕 조성사업	재료비	시설비	80	
행복농촌과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추진	재료비	사무관리비	50	

☐ 이 체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37건	31,433	31,433	31,433	

심 사 의 견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전용은 총 6건이며 예산액 1,288백만원 중 170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 전용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함에 그쳐야 하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6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이 체

- 예산 이체는 237건, 31,433백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임.
- 이체 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또는 업무 이동임

5) 계속비 결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25건)	76,063	32,355	43,683	25
다누리복합문화센터 건립	3,000	14	2,986	－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11,774	3,491	8,283	－
국민체육센터(시니어형) 건립	500	14	486	－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5,751	1,489	4,262	－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190	－	190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3,150	431	2,717	2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45	45	－	－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2,954	321	2,633	－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	2,976	1,244	1,732	－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4,738	1,873	2,865	－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용수개발)	2,987	2,140	847	－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366	5,413	3,953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4,541	342	4,194	5
신활력플러스사업	2,744	2,612	114	18
북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7	36	－
남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7	36	－
웅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5	38	－
위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23	87	36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483	362	121	－
농촌중심지활성화(농촌협약-거창읍)	3,882	1,996	1,886	－

세 부 사 업 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마리면)	2,421	546	1,875	-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주상면)	1,426	872	554	-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2,741	2,227	514	-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9,602	6,513	3,089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300	64	236	-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1건)	12,684	9,379	3,305	-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2,684	9,379	3,305	-

심 사 의 견

-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26건에 41,734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5건에 32,355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9,379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26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6)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통 계 목	예 산 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합 계	8,381	2,138	1,843	271	24
	801-01 일반예비비	1,500	1,070	1,057	-	13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881	1,068	786	271	11
	801-03 내부유보금	0	0	0	0	0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통 계 목	예 산 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타 특별 회계	합 계	73	0	0	0	0
	주차장관리	801-01 일반예비비	6	0	0	0
	수질개선	801-01 일반예비비	15	0	0	0
	농업발전자금	801-01 일반예비비	52	0	0	0

심 사 의 견

-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총 26건에 2,138백만원이며 그 중 1,843백만원을 지출하고, 271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백만원임.
-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예비비(801-01)는 총 11건에 1,05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유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열린음악회 개최 행사운영비임.
-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는 총 15건에 78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사유는
 - 7.16~20. 호우 피해 복구사업
 - 3~4월 이상저온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지원
 - 5월 우박 피해 산림작물 복구비 지원 등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우 피해 재난복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출은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볼 수 있음.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
계		242	398,947	119,812	30
명시 이월	일반회계	75	118,531	36,815	31
	댐주변	1	2,400	250	10
	상수도	4	4,695	1,555	33
	하수도	7	7,983	1,463	18
사 고 이 월	일반회계	107	160,847	28,944	18
	산업단지조성	1	1,573	250	16
	댐주변	1	2,400	543	23
	상수도	5	7,684	1,902	25
	하수도	4	7,614	1,414	19
계 속 비 이 월	일 반 회 계	35	72,536	43,371	60
	산업단지조성	2	12,684	3,305	26

□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현황(p.210)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계		234	98,594	68,050	19,001	11,543
명시 이월	일반회계	80	41,783	23,095	7,145	11,543
	댐주변	1	480	479	1	—
	상수도	3	3,335	—	3,335	—
	하수도	6	4,527	—	4,527	—
사 고 이 월	일반회계	138	47,567	44,143	3,424	—
	산업단지	1	333	333	—	—
	상수도	2	108	—	108	—
	하수도	3	461	—	461	—

심 사 의 견

-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임.
- 전년도 이월사유별 집행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률은 91.8%로 비교적 높지만,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률이 47.0%에 불과하며, 다시 사고 이월된 금액이 11,543백만원에 달함.
- 특히,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액 7,862백만원과 사고이월액 569백만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11,543백만원은 2024년부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인데, 2026 회계연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2027년으로 재이월이나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 ㉑ = ㉑ - ㉒	조 성 액 ㉑	사 용 액 ㉒	
계(9종)	76,984	△8,653	35,011	43,664	68,331
식 품 진 흥 기 금	132	△1	48	49	131
중소기업육성기금	4,605	△621	42	663	3,984
사 회 복 지 기 금	2,572	51	87	36	2,623
재 난 관 리 기 금	3,290	543	1,046	503	3,833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25	12	16	4	537
옥외광고발전기금	355	28	33	5	383
체 육 진 흥 기 금	1,118	17	37	20	1,1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544	△9,229	32,971	42,200	54,315
고 향 사 랑 기 금	843	547	731	184	1,390

심 사 의 견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76,98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5,011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3,664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331백만원으로 8,653백만원(11.2%)이 감소하였음.
-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229백만원 감소하였는데, 부족한 일반회계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규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9) 채권액 결산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1,098	5,257	5,196	11,159
일반회계	2,378	89	119	2,348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8,720	5,168	5,077	8,811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11,150	9	2,339	9	8,811	
보증금채권	회원권	133	—	133			
용자금채권	소 계	2,133	9	2,133	9	—	—
	주택용자	178	—	178			
	공무원학자 대여금	1,844	—	1,844			
	기타(용자)	111	9	111	9		
기타채권	소 계	73	—	73			
	기 타	23	—	23			
	행정소송 승소금	50	—	50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			8,811	

심 사 의 견

- 전년도 말 채권 11,098백만원 → 당해연도 말 11,159백만원
으로 61백만원 증가, 일반회계는 30백만원 감소, 특별회계
채권은 9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5,257백만원의 채권이 새로 발생하고 5,196백만원이 소멸하였는데, 5,196백만원의 소멸은 실제 상환·징수에 따른 소멸액인지, 감면·면제·결손 등으로 소멸된 금액인지 확인 필요.
- 채권 원금은 11,150백만원, 이자 채권은 9백만원이며 공무원 학자금대여 채권이 1,844백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2,339백만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채권 133백만원, 융자금 채권 2,133백만원, 기타채권이 73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금대여금, 주택융자이며, 기타채권은 행정소송 승소금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되며 세외수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10) 채무액 결산

- 해당사항 없음

11) 보조금 결산

－ 당해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13,642	414,509	349,743	51,781	12,985
일반회계	국	196,836	196,848	175,627	14,885	6,336
	도	62,322	63,508	47,897	13,762	1,849
	군	138,073	137,738	112,953	20,691	4,094
기타 특별회계	국	5,218	5,218	5,200	－	18
	도	74	74	70	－	4
	군	1,216	1,216	965	250	1
공기업 특별회계	국	5,912	5,912	4,796	496	620
	도	1,318	1,318	457	861	－
	군	2,538	2,538	1,656	825	57
기금	국	－	－	－	－	－
	도	134	138	121	11	6
	군	1	1	1	－	－

－ 이 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8,022	58,003	29,919	22,798	5,286
일반회계	명시 이월	국	7,780	7,780	2,223	5,429	128
		도	5,460	5,460	2,753	2,650	57
		군	9,339	9,339	3,483	2,133	3,723
	사고 이월	국	4,686	4,686	4,417	－	269
		도	2,689	2,679	2,262	－	417
		군	4,604	4,595	3,920	－	675
	계속비	국	7,554	7,554	3,284	4,258	12
		도	9,357	9,357	3,719	5,636	2
		군	6,220	6,220	3,525	2,692	3
기타 특별회계	사고 이월	국	－	－	－	－	－
		도	－	－	－	－	－
		군	333	333	333	－	－

심 사 의 견

- 수령한 보조금 414,509백만원 중 실제 집행은 349,743백만원으로, 64,766백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아 보조금 집행률은 84.4%에 그침.
- 이월된 보조금은 수령액 58,003백만원 중 집행액은 29,919백만원(51.6%)으로 이월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되었음.
-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군비부담액은 141,49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34%에 해당됨.
- 보조금의 교부 자체보다 교부받은 이후 실제 집행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조금 교부액을 과다 산정한 것은 아닌지, 사업량 감소나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데도 보조금 감액·반납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전 체 심 사 의 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액은 1,090,697백만원, 총 세출액은 854,024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36,673백만원임. 세입대비 21.69%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024년 923,569백만원에서 910,0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 규모가 일부 조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24,001백만원(35.8%)이고, 보조금 260,355백만원(28.7%), 조정교부금 31,456백만원(3.4%), 지방세는 41,905백만원(4.5%), 세외수입은 24,752백만원(2.7%)으로

-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7.2%)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67.9%)의 비율이 9배 가량 높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 세출은 854,023백만원으로 전년 (852,623백만원)대비 1,4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172,44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57,01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87,828백만원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2.2%), 공공질서 및 안전(34.7%)분야이며,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30.1% 감소하였음.
- 평균 집행률은 83.3%이며, 국도 및 지역개발이 64.3%로 집행률이 가장 낮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76,984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5,011백만원을 합산한 111,995백만원이며, 사용액이 43,664백만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8,331백만원임.

- 당해년도 조성액은 35,011백만원이고, 사용액은 43,664백만원으로 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8,653백만원이 더 많으며,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25년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자활 성공 지원금 등 19건 123백만원을 전액 미집행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2025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계	19건	123,051	0	123,051	
1	자활성공지원금	7,066	0	7,066	
2	효도수당 지급	100	0	100	
3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2,000	0	2,000	
4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1,050	0	1,050	
5	가출 여성 보호	600	0	600	
6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400	0	400	
7	거창형 맘편한 돌봄사업	5,000	0	5,000	
8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100	0	1,100	
9	재난안전 민관협력 지원	2,000	0	2,000	
10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1,835	0	1,835	
11	친환경 목재생산	82,000	0	82,000	
12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차지원 사업	4,000	0	4,000	
13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	2,000	0	2,000	
14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6,000	0	6,000	
15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00	0	200	
16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800	0	800	
1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200	0	1,200	
18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1,500	0	1,500	
19	농촌형 소화전 관리	4,200	0	4,200	

○ 2025년도 일반회계와 국도비 보조금등반환금에서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가 발생하였음.

- 연도 중 발생하는 반환금 등 변동 세입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예산부서와 공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적기 반영함으로써 예산과 결산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세입예산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함.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편성(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합계		0	5,300
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	0	194
관광진흥과	시도비보조금	0	1,928
복지정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0	18
건설교통과	시도비보조금	0	1,000
농업축산과	시도비보조금	0	723
건강증진과	시도비보조금	0	37
체육시설사업소	시도비보조금	0	60
전부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1,293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0	47

○ 거창군에서는 27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211개의 정책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달성 199개, 미달성 8개, 초과달성 4개로 작성되었음.

○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연관성과 결과 중심의 적성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역점을 두고,

-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되,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미달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아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회계연도 중 성과목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성과계획서도 동시에 경정하여 ‘수정 성과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덧붙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산림과에서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로 파악된 53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미부과 하였음
- 향후 무단점유 사실 확인 및 점유자 청문 등을 통해 무단점유가 확인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람.

III 질의 및 답변 : 생략

IV 토론요지 : 해당없음

V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우 용】

목 차

I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1
2. 세입예산안 대비표	1
3. 세출예산안 대비표	2
4. 심사결과	3
5. 변동조서	3
6. 부대의견	5

II .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경과	6
2. 제안사유	6
3. 근거법령	6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5. 질의 및 답변 요지	12
6. 토론 요지	12
7. 수정안 요지	12
8. 심사결과	12
9. 소수의견 요지	12
10. 기타 필요한 사항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8. 1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6. 8. 18.

라. 상정일자 :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 8. 28. 상정·의결)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 안	기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07,765,574	852,388,837	55,376,737	6.50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 계	868,410,915	811,809,302	56,601,613	6.97
	지 방 세 수 입	41,778,799	41,778,799	0	0.00
	세 외 수 입	35,257,934	35,067,910	190,024	0.54
	지 방 교 부 세	352,886,000	327,438,000	25,448,000	7.77
	조 정 교 부 금 등	32,510,615	30,283,815	2,226,800	7.35
	보 조 금	293,864,938	269,524,767	24,340,171	9.03
	보존수입등내부거래	112,112,629	107,716,011	4,396,618	4.0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9,354,659	40,579,535	△1,224,876	△3.02

3. 세출예산안 대비표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907,765,574	852,388,837	55,376,737	6.50
일반회계	838,954,962	790,178,883	48,776,079	6.17
특별회계	68,810,612	62,209,954	6,600,658	10.61
기 타	29,455,953	21,630,419	7,825,534	36.18
공기업	39,354,659	40,579,535	△1,224,876	△3.02

나. 위원회 및 회계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07,765,574	852,388,837	55,376,737	6.50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 계	868,410,915	811,809,302	56,601,613	6.97
	의회운영위원회	1,333,896	1,333,896	0	0.00
	총 무 위 원 회	467,632,148	444,008,079	23,624,069	5.32
	산업건설위원회	19,806,602	12,960,556	6,846,046	52.82
공기업특별회계		369,988,918	344,836,908	25,152,010	7.29

4. 심사 결과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15건에 2,116,000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5. 변동 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감액)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계					15건	2173000	▲2116000	57,000		
1	전략 담당관	전략사 업추진	미래발전 전략구상	공모사업 관리	405-01 (신원면 주거플랫폼 집기 비품 구입)	31,000	▲14,000	17,000	절차 미이행	144
2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구현	민간단체 활동지원	307-04 (민주평통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	30,000	▲10,000	20,000	예산 과다	149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3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구현	주민자치 활성화	307-04 (주민자치 한마당축제)	30,000	▲10,000	20,000	예산 과다	149
4	재무과	재산 관리	공유재 산관리	청사관리	401-01 (거창읍 청사 비가림시설 설치)	120,000	▲120,000	0	불요 불급	164
5	재무과	재산 관리	공유재 산관리	청사관리	401-01 (거창읍 청사 잔디광장 경관조명 설치)	25,000	▲25,000	0	불요 불급	164
6	재무과	재산 관리	공유 재산 관리	재산관리	405-01 (거창읍청사 읍민의 방 냉난방기 교체)	17,000	▲17,000	0	절차 미이행	164
7	관광 진흥과	관광 진흥	관광 시설 확충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	401-01 (병곡 벚꽃로드 야간 경관조명 연장 설치)	30,000	▲30,000	0	불요 불급	185
8	안전 총괄과	재난안 전관리	안전 지원	도로조명 시설관리	401-01 (도로조명시설 신설사업)	105,000	△105,000	0	불요 불급	265
9	안전 총괄과	재난안 전관리	안전 지원	도로조명 시설관리	401-01 (가북 용산~우혜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	35,000	△35,000	0	불요 불급	265
10	산림과	산림자 원조성	푸른거 창조성	푸른거창 조성지원	401-01 (마을 방치공간 개선)	170,000	△170,000	0	불요 불급	274
11	환경과	자연 환경	자연 환경	공중화장 실관리	401-01 (갈계마을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60,000	△60,000	0	불요 불급	283
12	건설 교통과	취약지 개발	소규모 지역 개발	주민편익 사업추진	401-01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법정))	500,000	△500,000	0	불요 불급	292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13	도시 건축과	도시 관리	도시 개발	소규모 도로관리	401-01 (도시계획시설 소파보수사업)	700,000	△700,000	0	불요 불급	310
14	도시 건축과	도시 관리	도시 개발	도시계획 도로개설	401-01 (더샵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1-78호선) 조성)	200,000	△200,000	0	불요 불급	311
15	농업 소득과	농업소 득인프 라구축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거점APC 운영지원	207-01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120,000	△120,000	0	불요 불급	344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6. 부대의견

○ 세입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농업소득과 소관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선도 농가에서 데이터 축적과 기술 지도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8. 14.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6. 8. 18.

라. 상정일자 :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 8. 28. 상정·의결)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 ㉠ + ㉢
		수입㉢	지출㉣	증감 ㉤ = ㉢ - ㉣	
계	54,315,125	1,256,267	38,842,884	△37,586,617	16,728,508
재정안정화계정	41,575,902	952,614	37,400,000	△36,447,386	5,128,516
통합계정	12,739,223	303,653	1,442,884	△1,139,231	11,599,992

2) 수입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42,528,516	42,528,516	0	
공공예금이자수입	952,614	952,614	0	
예치금 회수	41,575,902	41,575,902	0	
기타회계전입금	0	0	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3,042,876	13,042,698	178	
공공예금이자수입	303,653	303,475	178	
예치금 회수	12,739,223	12,739,223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	-	

3)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42,528,516	42,528,516	0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5,128,516	5,128,516	0	
일반회계 전출금	37,400,000	37,400,000	0	

○ 통합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3,042,876	13,042,698	178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예치금	11,508,892	10,508,892	1,00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	91,100	91,100	0	
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0	31,747	△31,747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0	1,000,000	△1,000,000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410,959	1,410,959	0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이자상환	31,925	0	31,925	

나. 사회복지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사회복지기금	2,623,075	68,339	74,600	△18,261	2,616,814
노인복지계정	1,134,353	30,339	19,600	10,739	1,145,092
자활계정	1,488,722	38,000	55,000	△1,700	1,471,722

2) 수입계획

○ 노인복지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164,692	1,164,692	0	
공공예금이자수입	30,339	30,339	0	
예치금 회수	1,134,353	1,134,353	0	

○ 자활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526,722	1,534,722	△8,000	
기타사업수입	2,000	10,000	△8,000	자활사업 매출액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36,000	36,000	0	
예치금 회수	1,488,722	1,488,722	0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0	0	0	

3) 지출계획

○ 노인복지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164,692	1,164,692	0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9,600	9,600	0	
경로당 간접 보수 지원	10,000	10,000	0	
노인계정 예치금	1,145,092	1,145,092	0	

○ 자활계정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지출액	당초지출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1,526,722	1,534,722	△8,000	
자립역량 교육지원	10,000	10,000	0	
자활한마당 참가지원	7,000	7,000	0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환경개선	8,000	8,000	0	
민간융자금	0	50,000	△50,000	
구상대리모텔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0	0	30,000	
자활계정 예치금	1,471,722	1,459,722	12,000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말 조성액 ㉠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옥외광고발전기금	372,826	38,268	74,600	△36,332	336,494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411,094	402,094	9,000	
보조금	9,000	-	9,000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옥외광고물 무연고 노후 간판 철거)
예치금회수	372,826	372,826	-	
이자수입	5,268	5,268	-	
기타수입	24,000	24,000	-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당초수입액	증 감	증 감 사 유
합 계	411,094	402,094	9,000	
비용자성사업비	74,600	34,600	40,000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20,000천원×2개소
예치금	336,494	367,494	△31,000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홍 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I 종합평가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8까지 9일간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업비 집행현황,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14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지적 요구하였음.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9기 “함께 여는 새로운 창조 거창”을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자리였음.
- 위원들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주요 내용은
 - 법과 규정에 맞는 인사행정 추진 및 직권남용 금지
 - ‘광역 농특산물 복합 유통센터’ 실질적 경쟁력 검토 후 추진
 -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사업’ 민간투자 가능성과 사업성 검증
 - 거창경찰서 이전 방안 마련

- 관광버스 주차장 마련, 위천천 수변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등 관광 인프라 확충
- 청년·청소년 분야 예산 확대
- AIP기반의 자택 돌봄·임종 지원체계 마련
- On 봄 축제 성과지표 관리
- 거창형 생태·자연 중심 관광정책 수립
- 창포원 카페·레스토랑 추가 설치 재검토
-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강화
- 제2스포츠타운 실시계획인가 조속한 이행
-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선제적 추진 및 국도비 확보 전력 추진
- 농정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 사유화 금지
- 법정 검사 대상 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철저
- ‘거창푸드종합센터’ 명칭 변경 검토 및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추진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 과수 저온 피해 중복 지원 체계 개선
- 감악산 별바람 언덕, 무장애 나눔길 관리 일원화 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음.

-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지적하였고,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406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 및 요구하였음.

Ⅱ 감사실시 경과

- 감사기간 : 2026. 8. 31. ~ 9. 8. (9일간)
- 감사장소 : 거창군청 대회의실
- 감사시행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비 고
김홍섭 의원	신재화 의원	하병오 의원 김미영 의원 신중양 의원 구교천 의원 강우용 의원 이흥희 의원 박수자 의원 백종숙 의원	최영미	고 영 운 전 형 성

* 배 석 : 전문위원(박혜진), 정책지원관(박재영, 정현주, 박홍선, 백수연)

- 감사범위 : 2025. 5. 1. ~ 2026. 6. 30.

* 군정업무 전반, 업무의 연관 및 연속성을 감안 지난 연도 업무 소급 감사

- 감사대상 : 전 국·담당관·과·소 · 읍·면

-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Ⅲ 감사결과

-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 141건

* 신분상·재정상 조치 요구사항 : 없음

IV 감사결과 처리 의견

○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 조속한 처리

○ 부서별 시정·지적사항 현황 : 141건

부서명	시정·지적 현황(건수)	부서명	시정·지적 현황(건수)
계	141	안전총괄과	6
		산 립 과	6
		환 경 과	4
		건설교통과	6
		도시건축과	9
행정국	19	농업기술센터	25
행정과	6	농업축산과	12
인구교육과	6	미래농업과	8
민원소통과	3	농업소득과	2
재 무 과	4	행복농촌과	3
경제복지국	30	보 건 소	5
경제기업과	5	보건정책과	3
문화예술과	5	건강증진과	2
관광진흥과	4	수도사업소	4
복지정책과	7	체육시설사업소	5
행복나눔과	9	거창골프장사업소	1
안전건설국	31	거창사건사업소	1

○ 부서별 시정·지적에 대한 요구내용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기 획 예 산 담 당 관	①예산집행·재정관리	○ <u>예비비</u>는 재정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재원인 만큼 <u>과다 편성을 지양</u>하고, 특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과도하게 잉여금으로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산정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u>집행잔액과 명시·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u>하며, 대형 보조사업 등의 지연을 최소화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u>민선9기 대규모 신규사업</u>은 군 재정여건과 중장기 운영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별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하여 <u>재정건전성을 확보</u>하기 바람.
	②군정홍보	○ <u>홍보매체별</u> 예산과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낮은 홍보는 줄이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단순 조회수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축제 참여, 관광객 증가, 지역상권 이용 등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u>성과지표를 마련</u>하기 바람. ○ 군정홍보 예산이 약 9억 원으로 과다한 만큼, 매체별 효과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u>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 중심으로 매체수를 조정하고 SNS 등 효율적인 홍보매체를 확대</u>하기 바람. ○ 온라인 광고의 매체별 조회수 등 성과자료를 관리하여 광고비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바람.
	③위원회 운영	○ 위원회 인재풀이 실제 신규위원 위축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인재를 확충하고, 기존 위원회 위축 현황과 연계하여 중복위원을 줄이고 다양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④주민참여예산 운영	○ <u>주민참여예산</u>은 주민 제안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통상적인 행정사업은 가급적 배제하는 등 사업 <u>선정기준을 명확히</u> 하여 운영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총회 상정 전에 법령 위반 여부, 사업비 및 추진 가능성 등을 <u>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u>하여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부적합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⑤기금운용관리	○ <u>통합재정안정화기금</u> 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과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2020년 약 1,600억 원에서 금년 말 약 160억 원으로 급감한 감소 사유와 사용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u>목적 외 소진을 방지하기 바람</u> . 아울러 향후 재정위기 및 세입 감소에 대비한 적정 최소잔액과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감소한 기금의 재확보 및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⑥의회 자료 제출 철저	○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로 요구한 부지매입 관련 감정평가액을 비공개한 것은 의회의 자료요구 취지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제출자료도 내용이 부실한 만큼, 향후 <u>의회 요구자료는 충실히 작성·제출하고 비공개 시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검토</u> 하여 처리하기 바람.
	⑦법무 행정· 소송관리	○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소송 승소율 등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하여, 위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위촉 기준과 평가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 고문변호사에게 월 자문료와 별도로 소송 착수금 등이 지급되는 만큼, 자문료와 소송비용의 지급 성격이 중복되는지 점검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이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수임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⑧연구용역 관리	○ <u>연구용역</u> 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새울행정시스템 등에 요약본이 아닌 공개 가능한 <u>최종보고서 전체를 게재</u> 하고, 기존 용역의 과제·내용·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며, <u>용역 결과의 실제 활용 여부까지 사후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u> 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전 략 담 당 관	①의료복지 타운 조성	○ <u>의료복지타운</u> 부지 중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부지의 규모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u>미활용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u>하기 바람.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이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변경된 만큼,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계획과 변경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바람. ○ 200병상으로 추진하더라도 <u>18개 진료과, 지역응급의료, 심혈관·중환자 등 거창권역에 필요한 핵심 의료기능이 확보되도록</u> 하고, 향후 <u>의료수요에 따른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 단계부터 증축 가능성을 반영</u>하기 바람. ○ 의사·간호사 등 필요한 <u>의료인력 확보계획과 병원 운영수지 및 군 재정부담을 사전에 검토</u>하고, 이를 반영한 거창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②화장시설 건립	○ 화장시설 유치 당시 주민에게 약속한 <u>각종 인센티브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을 점검</u>하고, 지원금 배분기준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기 바람. ○ 건립비뿐만 아니라 화장수요·수입, 운영비·주민지원금 등을 포함한 <u>장기 운영수지를 분석</u>하여 향후 군의 실제 재정부담과 운영방안을 의회와 군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특히 <u>10년간 사용료의 20%이내 지원이 적정한지 재검토</u>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 및 지원기준을 정비하기 바람. ○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u>수목장·반려동물 화장 등 수익사업의 도입 가능성과 수요를 검토</u>하여 자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공공산후조 리원·육아드 림센터 관련	○ 공공산후조리원·육아드림센터가 적십자병원 이전·신축과 별개로 추진되는 만큼, 병원 개원 시기와 시설 완공 시기 차이로 산부인과·신생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④지역활력 타운 추진	○ <u>지역활력타운의 분양·임대계획을 조속히 확정</u> 하고, <u>다누리복합센터·국민체육센터 등 공동시설</u> 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u>운영방안</u> 을 마련하며,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⑤관광지 야간경관 투자 효율성 관리	○ 관광지 대형 야간경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창포원 등 기존 시설의 설계·시공 방식과 사업효과를 점검하고, 향후에는 <u>단순 조명시설 확충을 지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 콘텐츠를 통해 실질적인 야행관광으로</u>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기 바람.
	⑥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리	○ <u>지역소멸대응기금</u> 사업은 평가등급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연구 용역 결과 및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구유입·정착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u>기금 활용의 실효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u> 바람.
	⑦글로벌 온천테마파크 조성	○ <u>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등 민자사업은 민간투자 가능성과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u> 하고, 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⑧거창경찰서 이전 관련	○ <u>거창경찰서 이전</u> 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협의도 이루어졌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의료복지타운 잔여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①도민체전 종합 대비	○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숙박·음식점·교통·환경정비 등 경기 외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친절·위생 수준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도 민 체 전 기 획 단	②도민체전 예산 효율적 집행	○ 군비 52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4개 군의 사업비와 부담액을 비교하여 <u>비용분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창군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u>하기 바람. ○ 경기장 시설은 대회에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대회 이후에도 군민들이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선수·임원·관람객의 지역 내 숙박·음식점·전통시장·농특산물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람. ○ 화장실 14개소 리모델링 등 시설·홍보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대회에 필요한 사업과 <u>일회성·과잉투자를 구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u>하기 바람.
	③ 도민체전 경기시설 및 사후활용 관리	○ <u>도민체전기획단과 체육시설사업소 간 원활한 업무연계</u>를 통해 경기장 공인·관계기관 승인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 대회 이후에도 전지훈련·초청경기 등으로 시설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도민체전 개막행사 및 방문객 편의대책	○ <u>개막식은 거창만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드론쇼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로 구성</u>하여 거창을 알리는 계기로 마련하기 바람. ○ 개막식 참가인원과 숙박업체를 고려하여 숙박·주차·교통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불친절·바가지요금 등 관광객 불편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행 정 과	① 인사행정 운 영 철저	○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① <u>법적 근거 없는 4급 서기관</u>의 5급 직위 강제 하향 역배치, ② <u>사고나 결원이 없음에도 단행한 위법한 5급 과장의 4급 국장 직무대리 지정</u>, ③ <u>법정 필수보직기간을 유명무실하게 한 ‘인사위원회 특별승인(88명)’</u>을 남발하였음. ○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및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등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판단되므로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u>인사운영 전반의 규정 준수 및 공정성 확보</u>를 위해 직급·직종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필수보직기간 2년 준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부여 등 인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규정 위반 및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복조치 계획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 ○ 그리고, <u>공무직 및 위탁기관 근로자의 유급휴가·병가 사용 실태를 점검</u>하여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휴가·복무관리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②주민자치회 운영	○ <u>주민자치회 프로그램</u> 강사료 비중이 높은 만큼 강사의 자격뿐만 아니라 강의경력·전문성·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u>강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u>하기 바람.
	③AI데이터 기반 행정	○ AI 행정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용인원·사용빈도·업무시간 절감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활용성과를 관리하기 바람. ○ 농업·인구·복지·관광·경제·예산 등 <u>행정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u>하고, 이를 정책분석과 예산투입 성과분석 등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④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가 형식적인 방문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문화·체육 교류, 농특산물 판매·홍보 등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류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⑤디지털 취약계층 키오스크 교육	○ 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무인·키오스크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u>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실제 기기를 이용해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키오스크 교육을 확대</u>하기 바람.
	⑥마을규약 정비 등 주민갈등 관리	○ <u>마을규약</u>이 정비되지 않은 82개 마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를 추진하고, 주요 사항이 주민 간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u>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관리</u>하기 바람. ○ 대평리 주민 갈등이 이장 취임 문제와 아파트 시행사와의 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송·갈등 등으로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애 나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바람.
인 구 교 육 과	①안심타요 버스 운행	○ 안심타요는 이용률과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운행방식을 개선하고, 택시 등 대체수단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청년사업	○ 청년사업과 청년공간은 실제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 <u>청년·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인 만큼 현재의 낮은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u> 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실질적인 청년 정착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및 사업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작은학교 살리기	○ <u>작은학교 살리기 사업</u> 은 입주자의 직업·생계여건 등을 파악하여 <u>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u> 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u>후속 지원방안을 마련</u> 하기 바람.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중 주상지구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속히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관리하기 바람.
	④청소년 관 련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유사·중복 프로그램과 이용 실적을 점검하여 시설 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청소년 수요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1인1예술 특화교육은 소수 학생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점검하고,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동아리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기 바람. ○ <u>청소년 사이버·스마트폰 도박 문제</u> 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조례에 따른 <u>전수·익명 실태조사</u> 를 조속히 실시하고 학교·청소년기관과 연계한 예방교육 및 중독예방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⑤교육발전 특구 관련	○ 교육발전특구 14개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과 적극 연계하기 바람. 아울러 국·도비 지원 종료로 불필요한 사업이 군비로 전환되거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별 재정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하기 바람.
	⑥학교복합 시설 운영	○ 학교복합시설은 돌봄·방과후 등 핵심 기능을 충실히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바람. ○ 거창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복합시설을 활용한 학생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감소 추세를 완화하여 학령인구 감소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민 원 소 통 과	①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 <u>식품·공중위생업소</u>는 점검·행정처분 실적에 그치지 않고 위반업소의 <u>개선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재점검</u>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생·시설·친절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계도 중심의 점검은 바람직하나, 점검실적과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u>관리대장을 충실히 작성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u> 바람.
	②원문정보 공개 관리	○ <u>원문정보 공개율</u>의 수치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공개된 문서의 내용과 검색·접근성을 점검하여 <u>군민이 주요 정책과 행정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정보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기</u> 바람.
	③지적재조사 민원관리	○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이 주민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u>조정금 발생 가능성과 예상 규모를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안내</u>하고, 고액 조정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재 무 과	①채납관리	○ 과년도 채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만큼 단순 채납액 관리에서 벗어나 채납액을 징수가능·곤란·불가능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재산변동을 지속 추적하여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바람.
	②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중 장기 대부재산과 소유권·지분관계가 복잡한 필지를 전수 점검하여 대부료 부과에 적정성과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관리하기 바람. ○ 공유재산 대부료 채납이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만큼, 단순 독촉과 일괄 정리에 그치지 말고 장기·반복 채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계약해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하고, 채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 거창읍사무소 잔디광장 경관조명사업은 연초에 완료했음에도 주민건의만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한 만큼, 주민건의사업도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③공용차량 관리	○ 사무관리비로 임차하는 차량을 포함한 군 전체 <u>공무용차량</u> 의 정수·임차·운행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u>총괄관리체계를 마련</u> 하기 바람.
	④계약관리	○ 수의계약 총량제(연 30건·5억원)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동일 주소·관계인 업체 등의 계약 분산이나 동일·유사공사의 분리발주 등 총량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 점검하고, 업체별 계약 편중 및 실질적 동일업체 여부까지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
경 제 기 업 과	①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 대규모의 군비가 투입되는 <u>첨단일반산업단지</u> 인 만큼 단지 조성 자체보다 기업유치가 핵심인 만큼, 입주방향기업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u>기업별 투자계획과 유치목표를 관리하여 준공과 동시에 실질적인 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u> 조치바람. ○ 기업유치의 핵심을 실제 투자액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두고, <u>투자보조금 지원 시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과</u>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u>거창군민 채용인원 등을 기준에 반영</u>하며, 실제 투자·고용 및 기업의 지속 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관리하기 바람. ○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단차를 부지 내 사면으로 처리해 약 2,000평의 산업용지가 감소하는 만큼, <u>사업비 절감보다 분양용지 확보를 우선하여 사토 반출</u>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산업용지와 기업유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첨단산업 공약은 실증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존 승강기 산업과 연계하여 기업·연구기관 유치와 R&D를 강화하고, 실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 노후 산업·농공단지는 장기간 공실과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종제한 등 입주제약 요인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 유치와 시설 재정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전력인프라 및 주민보호	○ <u>남하 제2변전소 건립을 조속히 추진</u>하여 계통 부족으로 제한됐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인센티브와 실질적 혜택으로 관련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주민 우려와 반대가 있는 만큼, 군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기 바람.
	③승강기산업 육성	○ <u>한국승강기대학교</u>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하되,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의 철골 내진보강·장애인 엘리베이터·장애인실 등이 변경·제외된 원인과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학교 지원금, 홍보비 등 반복 지원사업도 집행내역과 성과를 면밀히 검증하여 <u>사업계획 승인부터 설계변경·집행·정산까지 군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u>하기 바람. ○ 승강기산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온 만큼, 단순한 사업 추진실적보다 실제 구체적인 성과를 관리하고, TF팀 활동과 지원사업의 성과 및 투자효과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관리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u>승강기인재개발원</u> 교육생 등 수요에 비해 현재 기숙사가 부족한 만큼, 향후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u>기숙사 증축 등 시설 확충</u>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④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사업에 9억원 이상 투입한 만큼 방문객·매출 등 정량성과를 분석하고, 청년사업과 관행적인 선진지 견학은 재검토하여 혁신시장 중심의 실질적인 벤치마킹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시장 활성화와 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⑤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조건부 선정에 따른 보완사항을 철저히 챙기고 공모신청 마을의 최종 선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부업체나 브로커 개입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 <u>소수력·소형풍력 등 마을 단위 분산형 에너지사업의 입지와 경제성을 검토하여 주민소득과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u>하기 바람.
문화예술포	①문화재단 운영	○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고 관련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직 확대에 맞춰 군과 재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u>재단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강화</u>하기 바람.
	②거창한마당 대축제 추진	○ 거창한마당 기간에 평생학습축제·군민체육대회·녹색공간 등 여러 행사가 함께 열리는 만큼, 행사별 개최식과 내빈 의전 등을 통합·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재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16억 6,200만원이 투입되는 거창한마당대축제의 성과를 단순 방문객 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지인 숙박·지역 내 소비·상권 매출·농특산물 판매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축제 운영과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③거창국제연극제 운영	○ <u>거창국제연극제가 내빈과 의전보다 배우·작품·관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개·폐막식과 만찬 등 의전을 간소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우수 작품과 관객 중심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한편, 여름 야외공연의 장점과 최근 폭염에 따른 관객·배우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최 시기도 함께 검토</u>하기 바람. ○ <u>거창국제연극제 기간 중 식당·숙박 등 지역업체 이용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용기준을 마련</u>하고, 읍면 주민 참여 역시 동원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방식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u>과거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연극제와의 관련성,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u>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연극제의 다양성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바람.
	④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사업별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실적, 참여인원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보물 등 지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유산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상태 점검과 필요한 보수·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분산성의 국가유산 지정에 대비하여 사유지 이용제한 등 주민 민원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3건의 홈페이지 미공개 사유도 확인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바람.
	⑤문화시설 공공건축관리 및 운영활성화	○ 문화예술과 공공건축 사업에서 법정기준 누락과 설계 검수 미흡 등으로 설계변경·사업비 증액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u>설계단계부터 관련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u>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신달자 문학관 작가초대석과 문화프로그램이 평일 낮 시간대에만 운영되어 직장인 등 참여가 어려운 만큼, 저녁·휴일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운영시간을 개선하기 바람.
관 광 진 흥 과	①거창에 On 봄 축제 운영	○ 거창에 On 봄 축제의 성과를 단순히 방문객 수로만 평가하지 말고, 음식점 이용과 농특산물 판매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기 바람. ○ 특히 방문객이 증가했음에도 꽃·산양삼 판매액이 감소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문객이 실제 소비와 지역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산양삼 축제를 On봄 축제와 분리</u>하기 바람. ○ 거창에 On 봄 축제는 치유·창포를 핵심 주제로 한 대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발굴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포·꽃을 지역 농산물 및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②관광활성 화 및 기반확충	○ 반값여행 등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버스 주차장·숙박시설·단체식당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 증가가 지역 내 체류와 소비, 상권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u>체류형 콘텐츠·야간관광 등 관광 소프트웨어를 보강</u>하여 방문객이 실제로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 거북이·사각이의 상표권 등록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주요 축제·행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굿즈와 홍보 콘텐츠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캐릭터로 육성하기 바람. ○ 관광시설과 경관조명 등 시설 중심의 관광개발만으로는 대도시와 경쟁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u>거창의 산·계곡·하천 등 자연환경과 빨래터·돌다리 등 고유한 생활문화 자원을 복원·활용하는 거창만의 생태·자연 중심 관광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u>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u>건계정~한들대교 구간</u> 의 <u>위천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u> 하고, 거창교 재가설과 연계하여 경관조명과 수변 콘텐츠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③가조온천 관광지 관리	○ 가조온천 족욕체험장의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에 불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적기에 정비하기 바람. ○ <u>가조온천지구 내 사유지</u> 가 주차장·체육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토지 활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실제 토지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u>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u> 을 세심하게 검토하기 바람.
	④수승대 관리	○ 수승대 관광지에 노후관광지 재생·야행관광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존 투자사업의 효과와 시설별 이용객·수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동안의 투자 방향이 적정했는지, 향후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복 지 정 책 과	①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 개선	○ <u>자원봉사센터</u> 가 직영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u>법인화 또는 민간위탁 전환을 적극 검토</u> 하고,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②문화프로그램 운영	○ 문화교실 강사의 장기위축으로 신규 강사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개모집과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강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강생 만족도·출석률·강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한 위촉기회를 보장하기 바람. ○ 인기 문화교실 수강신청 시 방문접수로 인한 대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접수를 병행하는 등 수강신청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및 전시관의 활성화	○ <u>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및 전시관의 활성화</u> 가 미흡하고 전시자료도 부족한 만큼, 후손 등과 적극 협의하여 <u>선생의 생애·사상·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시 콘텐츠를 보강</u> 하는 한편, 교육·체험 등 실질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④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보훈단체 회원이 고령화와 사망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만큼, 감소하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망 위로금과 참전수당 등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⑤저소득층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	○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제도별 지원조건과 지원 기간이 다른 만큼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⑥아립1004 운동 활성화	○ 아립1004운동의 모금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더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금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주시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소액·일상적 참여 등 군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추진하기 바람.
	⑦복지사각 지대 지원 강화	○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가능한 복지 제도를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발굴부터 지원까지 꼼꼼히 챙기기 바람.
행 복 나 눔 과	①다문화지 원	○ <u>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의 참여실적과 집행률이 감소</u> 하고 있는 만큼, <u>수탁기관의 운영실태와 실적 저조 원인을 점검</u> 하고 사업방식이나 수탁기관 개선 등을 통해 참여인원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u>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체험 프로그램과 상호이해 교육 등을 확대</u> 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바람.
	②육아드림센터 개관 대비 운영체계 구축	○ 육아드림센터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개관 이후 운영비·인력·이용수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③노인복지 시설 운영	○ 나눔경로식당의 급식 수요와 지역별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현재 이용인원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④경로당 운영 및 지원	○ <u>무더위쉼터</u> 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폭염 시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현장 의견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필요 시 <u>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u>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경로당 기본 비품의 예기치 못한 고장 등 긴급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군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⑤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가 어르신의 소득과 건강,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참여 희망자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량 확대를 지속 건의하기 바람.
	⑥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한 만큼, 농협 등 지역 기관·단체의 우선구매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바람.
	⑦아동·청소년 지역보호체계 강화	○ 아동학대 등으로 분리·보호되는 아동과 위기청소년이 지역 내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 공간과 청소년 쉼터 등 지역 보호체계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⑧공공 위생용품	○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의 이용자별 수요와 제품별 선호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품목과 지원방식을 마련하고, 어르신을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지원	위한 성인용 위생용품도 별도의 수요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람.
	⑨노인재가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계속 거주하고 생의 마지막까지 지내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u>AIP 기반의 자택 돌봄·임종 지원체계 마련</u> 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안 전 총 괄 과	①안전관리	○ <u>군민안전보험</u>은 실제 사고건수와 보험금 청구건수를 비교해 사고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장회의·인터넷 등 기존 홍보와 함께 병원 원무과·응급실·장례식장 등에 보험금 청구 안내문과 QR코드를 상시 비치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바로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u>홍보체계를 강화</u>할 것을 주문함.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기별 점검과 교육에 그치지 말고 추락·지게차 전복 등 실제 발생한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동종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내년부터 농기계 배달서비스가 시행되는 만큼 조작이 미숙한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됨.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배달서비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②재해위험 지역 관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만큼, 지정 과정과 기준이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불편이나 재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 신중하게 지정·관리할 것을 주문함.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이 나온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지정이 지연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9월 말 용역 결과에 따라 위험지역은 선제적으로 안전조치하고 지정·고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120자원봉사대 운영	○ 120자원봉사대는 농기계 수리·의료·이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호응이 높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 선호도가 높은 분야의 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기계 수리 시 고액의 부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자부담 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폭염 대응	○ 무더위쉼터는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경로당 중심에서 벗어나 관공서·약국·편의점 등 생활권 시설을 활용하는 등 쉼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미화·주차관리·도로·공원관리 등 야외근로자는 폭염 시간대 작업을 조정하고,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냉방 휴게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풍성이 좋은 작업복과 냉각조끼·쿨토시 등 개인 보냉장구를 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u>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화</u>하기 바람.
	⑤재난정보 관리	○ 재난문자가 너무 잦거나 중복 발송되면 주민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음.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이고, 필요한 재난정보는 적시에 안내하는 등 발송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
	⑥가로등 관리	○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가로등 설치 반대 민원이 있는 만큼, 위치·높이와 배광을 조정해 농경지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가로등 전기료와 유지보수비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가로등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음. 빈집이나 이용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 등 불필요한 가로등은 이설하고, 신규 설치 요구 시 기존 가로등의 이설을 우선하는 등 <u>가로등 총량과 설치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u>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산 림 과	①항노화힐링 랜드 관리	○ <u>서틀버스</u>는 성수기에는 만차와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반면 비수기에는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u>성수기·비수기 수요에 따라 운행 대수와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u>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운행업체 선정 시 성수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운행능력을 반영하고, 비수기 운행 대수 조정이 임차료 등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 항노화힐링랜드는 과거 <u>지역사랑상품권 환급사업</u>을 운영했던 만큼, 당시 효과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급사업을 <u>다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u>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환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거창산림레 포츠파크 운영 및 활성화	○ <u>거창 산림레포츠파크</u>는 <u>방문객을 체류와 지역경제로 연결</u>할 수 있도록 숙박물·유료체험 이용률·1인당 소비액 등 실질적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창포원·항노화힐링랜드·감악산 등과 연계해 여행사와 직접 협의하여 <u>소규모 체류형 관광상품과 기업·기관 연수 등을 시범 운영</u>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소규모 시설을 보완하여 <u>평일 숙박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u>하기 바람. ○ <u>마운틴코스터</u>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장에 대비해 전기차·카트 등 운영장비를 미리 확보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예상보다 운영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어 배터리 성능 저하 등 관리 문제와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미 확보한 장비가 장기간 방치되어 추가적인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u>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u>하기 바람.
	③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시설 관리	○ <u>고견사 산불진화임도 사업</u>이 토지사용승낙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승낙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u>사방댐</u>은 관리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준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사방댐을 적극 발굴하고 <u>준설·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u>하기 바람.
	④석재·토석 채취 행정 및 환경관리	○ <u>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u>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석산허가 시 갖춰야 할 시설과 <u>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u>하고, <u>업체별 지원 필요성과 환경개선 효과를 따져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관리</u>하기 바람. ○ 토석채취 인허가 관련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업체별 용역비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최근 용역 발주 및 계약 현황을 업체별로 분석하여 집중 사유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또한 업체별 인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내용·횟수 및 처리기간 등을 비교·점검하여 동일한 법정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 배왕석재의 복구비 부족 사례가 있었던 만큼, <u>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시 복구비를 현재 복구비용에 맞게 재산정해 충분히 확보</u>하고, 보증증권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실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람. ○ 석재산업은 환경문제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바람
	⑤임업인 소득지원사업	○ <u>표고버섯 배지 지원</u>은 특정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횟수·물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규모·신규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u>임업직불금 수혜 농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 임업인 발굴과 홍보를 강화</u>하기 바람. 아울러 향후 <u>밀원수 관련 직불제 도입 등에 대비해 밀원수 조림도 확대</u>하는 등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영호남 산마루숲길 조성	○ <u>영호남 산마루숲길</u>은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249km의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실제 이용수요와 기존 숲길과의 중복성,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입 예산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환경과	①창포원 관리 및 활성화	○ <u>정원치유박람회</u>를 거창한마당 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만큼 기존 행사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코리아가든쇼·시민참여정원·정원산업전·플리마켓 등 각 프로그램에 창포원의 생태·습지·치유라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10억8천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u>국가정원 지정과 향후 국가정원박람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와 운영기반을 내실 있게 마련</u>하기 바람. ○ <u>거창창포원의 국가정원 지정</u>을 위해 주제정원 등 지정요건과 유기농복합단지·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등 주요 시설, 전담조직·전문인력 및 운영·관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창포원 기증목은 기증자의 뜻이 담긴 수목인 만큼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육·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고사목은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기 바람. ○ <u>창포원 맨발걷기길</u>은 바닥 상태와 경운·정비 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u>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u>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u>창포원 야간조명 시설의 이용실태를 점검</u>하고, 이용객이 저조한 경우 조명 운영방식과 시설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u>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u>」은 기존 야외공연장을 이전하고 국화온실·주차장 등을 배치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이미 카페·레스토랑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u>약 20억 원 규모의 추가 카페·레스토랑 조성은 기능 중복과 이용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과 규모를 재검토</u>하고 두 사업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②생활폐기물 관리	○ <u>면 지역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u> 를 마리·위천 등에서 다른 면 지역으로도 확대하고, 1~2대의 수거차량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③공중화장실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가 부서와 읍·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만큼,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부서 간 조정·점검 등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불법촬영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방화장실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가능 여부도 점검하여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④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 <u>전기차 충전시설</u> 이 고장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충전업체와 계약 시 신속한 수리·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u>장기 미운영 시 철거 및 원상복구</u>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마련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①준영구 논두렁 설치	○ <u>준영구 논두렁 사업</u> 은 읍·면 신청에 의존하기보다 전체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인 일손 부족은 인력 지원 등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인 대규모·공동경작 전환과 철거·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u>지속적인 구조물 설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u> 하기 바람. ○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가 예상되는 지역은 신중히 선정하고, 영농여건이 열악하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하는 등 대상지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②대형공사 설계 및 사업관리	○ 대형공사는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사전에 충분한 기초조사와 현장여건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대규모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u>설계 단계의 검토를 강화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u> 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카카오택시 이용이 어려운 <u>군민의 야간 택시 이용 불편</u>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와 협의하여 <u>전화로도 운행 가능한 택시를 연결할 수 있는 콜 시스템 등 이용 편의 개선방안</u>을 마련하기 바람. ○ <u>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u>에서 경조사비 부당 산입 및 수입금 누락 등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장기간 제대로 검수·확인하지 못한 만큼, 감사 적발 후 보조금을 사후 감액하는 데 그치지 말고 <u>부실 용역에 대한 업체 제재 및 용역비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의 검수·관리 책임을 강화</u>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바람.
	④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만큼, <u>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대기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u>하고, 바우처택시의 운영기준과도 비교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⑤ 농업용수 및 가뭄대응	○ <u>미사용 저수지를 포함한 노후 저수지</u>는 시설별 안전등급과 결함 정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세굴·누수·여수로 손상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정비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은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조속히 정비하는 등 <u>체계적인 안전관리</u>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기존 수원과 연계한 <u>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수원 확보가 필요</u>한 만큼, 지역별 수자원 여건을 조사해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국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⑥도로·교통 시설 개선	○ <u>남부우회도로</u>는 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개발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보상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최대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u>대평리 만남의광장</u> 일원은 차량 진출입과 동선에 불편이 있는 만큼, 남부우회도로 준공을 기다리기보다 차로 조정 등을 통한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u>회전교차로 설치</u>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협의·검토하기 바람. ○ <u>창동교 하부도로</u>는 집중폭우로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차단봉이 작동하지 않은 만큼, <u>차단시설의 작동 여부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u>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u>소규모 공용주차장</u>은 주차수요와 필요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규모가 작더라도 주차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u>사업비 부담이 적은 나대지 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u> ○ <u>과속방지턱 등交通安全시설의 관리 시 도색·표지 등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u>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도 전수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 <u>가북~해인사 연결도로</u>는 장기간 중단된 사업인 만큼,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합천군 및 해인사와 적극 협의하고 도로 개설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u>국농소 삼거리</u>의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량을 반영한 신호체계 개선과 <u>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성을 검토</u>하기 바람.
도 시 건 축 과	①도로·교통 시설 관리	○ <u>시외버스터미널 앞 차로 분리시설</u>로 인해 승하차 차량의 대기와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터미널 이용객의 승하차와 차량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u>펜스 및 차로 운영방식을 개선</u>하는 등 도심 환경과 교통편의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도시재생 사업 운영 및 활성화	○ 죽전·상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완료 후 시설의 주민 이용실적과 운영현황, 상권 활성화 효과를 점검하고, 특히 운영이 부진한 시설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생력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김천지구와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준공 전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프로그램·콘텐츠를 구체화하고, 관광·마케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김천지구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골목길 정비 를 중심으로 하고, 전통시장지구는 기존 전통시장·청년창업사 업과의 중복을 점검하면서 관광버스 주차·승하차 공간 등 상인과 이용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거창산단 전용IC 관련	○ <u>거창산단 전용IC</u>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선정으로 국비가 확보된 만큼, 국비 지원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전용IC 설치가 실제 <u>입주기업 유치와 물류수요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u> <u>면밀히 검토</u>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 거창IC 이용과 비교한 접근성 개선 효과와 예상 물류수요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전용IC 설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추진하기 바람
	④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 송정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원도심 상권 위축과 기반 시설·형평성 등의 문제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음에도 주민건의로 재검토한 사례인 만큼, 개별 민원에 선심성으로 대응하기보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듣고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 관광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작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이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만큼, <u>군관리계획 수립 시 창포원·별바람언덕 등 주요 관광거</u> <u>점 주변의 용도지역 확대 필요성을 적극 검토</u>하고, 경상남 도와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관광수요에 맞는 숙박시설 등이 입 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⑤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하도급업체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설계변 경 사유와 원·하도급 계약금액 및 조정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 기 바람. 특히 <u>당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반영할 수 있었</u> <u>던 사항이 사후 설계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현장조사</u> <u>와 설계검토를 강화</u>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	○ 김천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거창교 재가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안전성과 통행 기능을 확보하고,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과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거창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향후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교량으로 조성하기 바람.
	⑦보행시설 안전관리	○ 데크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사고와 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u>기존 데크를 전수조사하여 위험·노후 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정기적인 점검·관리체계를 마련</u> 하기 바람.
	⑧도시바람길숲 조성관련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되, 열섬·미세먼지 저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큰 도심 공원 조성을 적극 확대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⑨공공시설 인허가 및 행정절차 관리	○ <u>제2스포츠타운</u> 은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실시계획인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으며, 내부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u>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만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중지를 검토하고, 장기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u> 하기 바람.
농 업 축 산 과	①농어촌기본소득 관련	○ <u>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u> 등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두 차례 공모 탈락을 교훈 삼아 조례·예산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u>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u> 하기 바람.
	②농업회의소 운영	○ <u>농업회의소</u>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2026년 8월 <u>법제화에 맞춰 조례·예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u> 하고, 회원 감소와 대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참여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청년 귀농·귀촌 등 우수인재 발굴·지원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농업보조사업 관리	○ 영농법인·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사업이 사업 목적과 달리 특정 농가 중심으로 활용되거나 지원 차량이 개인 운행·임대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u>보조사업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익성과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u> 하기 바람.
	④농번기 마을공동급식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마을별 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를 검토하기 바람. 또한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안내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바람.
	⑤농업인 월급제	○ <u>농업인 월급제</u> 가 장기간 시행에도 참여농가가 60~65농가 수준에 머물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와 <u>농가 수요를 재점검하여 2027년 이후 운영방식과 지속 여부를 재검토</u> 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요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⑥양봉산업 지원	○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꿀벌의 건강한 사육을 위해 화분·면역증강제·방제약품 등 지원사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기를 면밀히 관리하기 바람.
	⑦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u>농업인안전재해보험</u> 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실제 농작업에 종사하면서도 미등록으로 <u>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u> 하고,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군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⑧농업인 소득복지사업 추진	○ 농어민수당·공익직불금 등 매년 반복되는 신청사업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사전 안내와 미신청자 확인 등 신청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⑨축산농가 지원	○ 친환경 축사 등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지원방향을 소농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u>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유통·이용실태를 점검</u>하고, 군비 지원의 취지가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소비 연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u>사일리지 및 종자대 예산이 감소한 만큼 감액 원인을 점검</u>하고, <u>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u>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조사료 관련 사업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 ○ 한우농가의 규모화와 신규 진입·2세농 유입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조사료·사료 수급, 가축분뇨 처리, 방역 등 축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사육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⑩여성농업인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가 일반 개인주택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공간과 안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장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및 유허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u>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u>하기 바람.
	⑪반려동물 지원사업	○ 반려동물 지원사업(펫월드 조성)은 실제 이용수요와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조정한 만큼,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조성하고 사과테마파크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실질적인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⑫축산환경 관리	○ <u>가축분뇨 부속도</u> 검사는 <u>법정 관리사항</u> 이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법정 검사대상 농가 대비 검사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바, 축분 방치에 따른 악취·수질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활한 부속을 위한 교반장비 등 필요한 장비 지원도 확대하기 바람.
미 래 농 업 과	①농산물 유통·판매 및 관로확대	○ <u>푸드종합센터</u> 가 공동구매 시 군비를 투입하여 농가 매입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격 관련 민원이 발생한 만큼, 지원 대상·기준과 할인율, 연간 지원규모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 참여 농가와 비참여 농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람. 또한 농협·축협 및 민간 유통업체와의 가격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부담을 함께 점검하기 바람. ○ 아울러 매출액 대비 인건비·운영비와 군비 지원 규모를 분석하여 직영 운영의 효과와 비용 효율성을 검증하고, <u>운영성과에 따라 민간위탁 등 운영방식도 재검토</u> 하기 바람. ○ 푸드센터와 거창물의 매출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상품 구색을 보완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 문자 홍보 등 적극적인 판매·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u>로컬푸드 판매수수료</u> 가 타 판매처에 비해 거창군 푸드센터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u>수수료 산정기준을 점검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u> 하기 바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영 이후 관내 농산물 공급비율이 증가한 만큼, 단순히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품목별 수요와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가의 생산계획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②농산물 가공식품산 업 육성	○ <u>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신제품 출시</u> 와 이용농업인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u>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u> 를 통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재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아울러 신제품 출시 건수, 제품별 매출액, 이용농가 수, 투입예산 대비 성과 등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u>조례상 이용 자격요건도 점검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u>하기 바람. ○ <u>공유형 식품가공센터</u>가 준공 이후에도 운영방향과 명칭 등 기본적인 준비가 미흡한 만큼, 조속히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농산물의 가공·창업 지원이 실제 제품 생산과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공유형 식품가공센터 HACCP 용역비가 객관적인 원가계산이나 견적 등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제시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업무범위와 용역비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계약하기 바람.
	③농업시설 운영·인력 및 행정관리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근무자의 공유형 식품가공센터 전보 과정에서 전보 여부와 연계하여 가급에서 나급으로의 처우 변경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근로자의 처우 변경은 명확한 기준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④청년농업·스마트농업 육성	○ <u>스마트농업 육성지구</u>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청년농에게 영농기술과 임대온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 준공과 임대에 그치지 않고 농지·정책자금·시설자금·판로 등을 연계하여 <u>임대기간 이후에도 실제 농업인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u>하기 바람. 또한 청년농 선발 시 외지 청년농 유입뿐만 아니라 거창에서 농업을 시작한 청년농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기간과 사업계획, 지역 정착 의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⑤친환경농업 및 농가 경영안정	○ <u>친환경 벼 재배농가</u>의 자재비 부담이 큰 만큼 친환경농자재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u>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u>하고, 농협과 적극 협의하여 <u>친환경 벼 생산물량이 안정적으로 수매</u>될 수 있도록 수매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천적생태과학관 관리	○ 천적생태과학관이 아트갤러리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부족해진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컨테이너 시설로 보강하는 것은 철거와 재투자가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사업방식인 만큼,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시설의 활용성과 사업 간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⑦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 <u>유용미생물 배양센터</u> 의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수요에 맞춰 공급량과 공급방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농업인의 <u>영농시간을 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시간을 개선</u> 하는 한편, <u>키오스크 등 스마트 무인공급시스템 도입</u> 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작물별 미생물의 사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활용교육도 강화하기 바람.
	⑧실증시범포 운영	○ <u>실증시범포</u> 가 신제품·신기술을 시험하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연구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험작물별 생육·수량·품질·경제성 등을 <u>체계적으로 분석</u> 하고, <u>그 결과를 실제 농가의 기술지도와 신기술·신제품 보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u> ○ 실증시범포를 농업인단체와 관심 있는 <u>농업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실증시범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와 운영기준을 정비</u> 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시험작물을 제안할 수 있는 의견수렴창구를 마련하여 약용·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작물의 재배 가능성과 경제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 바람. 또한 조경용 초화류는 실증시범포에서 직접 생산·배부하기보다 화훼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으로 전환하여 본래 기능에 집중하기 바람.
	①광역농특산물복합유통센터 추진	○ <u>광역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u>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협·APC와 연계한 물량확보, 자금순환 및 마케팅 전략을 <u>단계적으로 마련</u> 하고, 농업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농 업 소 득 과		○ 광역 농특산물 복합 물류센터는 3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만큼, 사전협의나 이용수요 검토 없이 용역과 시설 조성부터 추진하기보다 인근 시·군 농협·영농조합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u>실제 물량과 참여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u> ○ 특히 현재 APC도 이용률과 외부 출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대규모 시설을 조성한다고 물량이 확보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존 APC의 활용과 유통구조 개선 가능성, 농가가 기존 출하처를 변경할 수 있는 <u>실질적인 경쟁력 등을 우선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u>하기 바람.
	②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u>과수 저온피해</u>는 개화기 피해와 실제 착과·수확량 감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가 최종 생산량 감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하고, 보험금·재해복구비·농약대 등 <u>동일 피해에 대한 총 지원액과 실제 피해액을 비교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분석</u>하기 바람.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가입률 관리에 그치지 말고 농가 부담과 군비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소규모·고령농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 바람.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입률, 농가부담 보험료, 군비 지원액, 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가가 보험금 산정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율·착과량 등 주요 산정내역의 투명한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u>저온피해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및 보상체계 개선을 농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에 적극 건의</u>하기 바람.
행 복 농 촌 과	①감악산 꽃&별 여행 관련	○ <u>감악산 꽃&별 여행</u>은 미디어파사드·조명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과 주무대 규모는 최소화하고, 감악산의 노을과 야간 자연경관 등 고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에 집중하기 바람. 또한 노을을 충분히 감상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시내로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람. ○ <u>함양~울산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신원IC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신원면 일원 주차공간 확보 및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대책을 마련</u>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셔틀버스 의존도를 낮추고 매년 반복되는 교통 관련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감악산 꽃&별 여행은 차량예약제 시행 초기인 만큼 미예약 차량의 원활한 회차 및 현장 안내 등 교통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먹거리장터·꽃&별마켓 등 입점업체에 대한 품질·위생·가격관리와 운영자 교육을 강화하여 방문객이 신뢰할 수 있는 축제장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람. ○ 감악산 꽃&별 여행은 단순 축제행사에 그치지 않고 <u>별바람언덕, 무장애 나눔길</u> 등 감악산의 산림·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질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u>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담당부서로의 조정 및 관리 일원화 체계 마련을 검토</u>하기 바람.
	②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 <u>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u>은 대동리 일대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인근 생활권과 연계하여 조성된 <u>녹지·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u>하는 등 지역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③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리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시설 조성 후 운영비·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별 운영성과를 관리하여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이 부진한 마을은 원인을 진단하여 자립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보 건 정 책 과	①보건기관 운영	○ 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주민 의료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인 만큼, 긴급환자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친절교육과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②응급의료 체계 운영	○ 응급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군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료진 확보와 응급의료체계 운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취약지역 응급의료와 달빛어린이병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별 지원의 적정성과 성과를 면밀히 관리하고, 타 지역 주민의 이용 등 광역적 의료수요까지 고려하여 도비 등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③지역응급 의료 및 의료복지타 운 기능 강화	○ <u>적십자병원</u> 응급실 내원환자의 규모와 중증도, 진료내용, 전원 사유 및 전원 의료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응급 의료 수요와 부족한 진료·병상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u>신축 중인 의료복지타운의 적정 병상 규모와 진료기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u> 바람.
건 강 증 진 과	①지역 분만의료체 계 강화	○ 농촌지역일수록 응급분만 등 출산의료체계가 중요함에도 매년 5억원 가량을 지원하고도 수년간 지역 내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첫 분만이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지역 분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타 지역 출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공공산후조리원 연계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②치매환자 재가돌봄 및 지역사회 돌봄	○ <u>치매환자</u> 가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 복용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주민들이 함께 살피는 <u>주민참여형 재가돌봄 시범사업을 추진</u>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수 도 사 업 소	①상수도공 급 및 시설관리	○ <u>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u>하는 경우 전환 후 각 수용가의 통수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상수도의 누수량과 유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수량이 많은 구간은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정비하기 바람. 아울러 옥내배관 및 옥내누수는 수용가 책임임을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바람. ○ 지방상수도 옥외배관을 기존 마을상수도 옥내배관에 연결하는 경우 기존 배관 현황과 연결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이중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u>진산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u>은 기존 식수의 수질 문제와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설계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안정적인 지방상수도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u>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충족</u>할 수 있도록 1급 인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수장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행복마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법령과 조례에 따른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산정 및 <u>기 설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u>의 적정성을 <u>재검토</u>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②하수도 및 침수·배수관 리	○ 기후변화로 집중강우에 따른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u>우수관 점검·준설을 철저히 시행</u>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과 시내 배수 취약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특히 빗물받이 위치 조정, 경계석 정비 등 배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은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u>시내 하수도 맨홀을 전수조사</u>하여 악취 발생 및 취약지역을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파악하고, 관로 퇴적·낙차 등 원인을 분석하여 준설·<u>악취차단시설 설치</u>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u>청림지구 상하수도 사업</u>은 공사 후 훼손된 아스콘 포장의 원상 복구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설계단계부터 포장 등 원상복구 비용을 반영하고 공사 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③수질 및 상수원 보호	○ <u>과거 농사용으로 개발된 관정 중 현재 식수로 이용되는 사례</u>가 있으므로 한전의 과거 농업용 전기사용 자료와 관정 현황을 연계하여 해당 관정을 파악하고, <u>음용에 적합한지 수질검사 등을 실시</u>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거창읍 상수원보호구역은 축산·석산 등 오염원에 대한 수시 감시·점검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철저히 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④계약 및 공사발주 관리	○ 상하수도 공사 시 유사·연계된 공사를 <u>소액 수의계약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u>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사내용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 발주하는 등 적절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람. ○ 마을상수도 사용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관정을 사용하는 곳 중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빠짐없이 <u>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u> 조치바람.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능한 국·도비가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웅양 지방상수도 취수원을 웅양저수지로 변경 검토하라는 2024년 행감 지적에 대해 취수원 변경불가라는 조치결과 답변이 있었으나 변경불가 사유가 부적절해 보이므로 재추진 검토 바람.
	①스포츠 마케팅 관련	○ <u>스포츠마케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u>를 위해 <u>전문관 제도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u>하고, 도민체전 이후에도 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서 좋은 성과를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체 육 시 설 사 업 소		거두고 있는 만큼, 체재비 등 지원에 따른 실제 체류일수와 참가 인원, 지역 내 소비액 등을 분석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②체육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	○ <u>수영강사 초과근무수당</u>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강습 여부와 다르게 초과근무가 인정되거나 수당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근 3개월분에 한정하지 말고 <u>202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기록·강습일지·수당 지급내역 등을 전수 점검하기 바람.</u> 아울러 두 강사가 팀장을 번갈아 맡으며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확인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부적절한 지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 <u>민원 발생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갱신기대권을 고려하되, 이를 일률적인 재계약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근무평가와 징계 등 객관적인 근무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람.</u> ○ <u>스포츠파크 야외골프연습장</u>은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타당성 검토와 각종 행정절차에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해 왔음에도, 민간업체와의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와서 이용수요 감소와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당초 수요·경제성 분석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고려한 추진방향을 조속히 결정하기 바람. ○ 기존 골프연습장까지 철거하여 동호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민간 골프연습장의 영업기반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학교체육 및 체육인재 육성	○ 체육진흥 분야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학생 운동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우수선수 발굴과 지역 <u>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훈련·장비·지도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u>하기 바람. ○ U-12·U-15·U-18 등 연령별 유소년 축구팀이 각각 운영되면서 상위 연령대로의 선수 육성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만큼, 협회 등을 중심으로 연령별 팀의 운영과 선수 육성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군 지원과 학부모 회비 등 자체부담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하여 지속적인 유소년 축구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④파크골프 장 운영 및 관리	○ 파크골프장 공인인증을 추진할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사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을 사전 점검·보완하고, 공인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한 사전에 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에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파크골프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초·환경정비 등 일상적인 관리사항과 시설 유지·보수 등 행정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파크골프장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u>남상면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허가 등 선행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u>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과 같이 준공 이후 배수·관수시설 보완이나 잔디 재정비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기준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⑤체육시설 사업 및 인허가 관리	○ <u>제2스포츠타운은 실시계획인가</u> 신청 이후 2년 8개월이 넘도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시설을 먼저 조성·사용하고 준공식까지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었으며, 시설 조성 후에도 배수시설 등 문제로 보완·재시공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장기간의 절차 지연으로 동일·유사 용역이 반복되는 등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예산과 행정력이 중복 투입된 만큼, 사업 추진 경위와 행정 절차 이행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 ○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은 <u>준공과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인허가와 설계·시공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이 정상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u> 하기 바람. ○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설의 적법한 사용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하고, <u>적법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u>하기 바람.
거창골프장사업소	①거창CC 운영	○ 거창CC는 직영 전환 이후 인건비 등 고정운영비와 투자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향후 노후시설 보수와 재투자 비용도 필요한 만큼, 고정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 구조를 마련하기 바람. 이를 위해 주변 골프장과의 이용요금을 비교하여 관외 이용요금은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고 이용률과 부대 수입을 높이는 등 수입을 확대하되, 조기 인수의 주요 목적이었던 군민 이용혜택은 유지·확대하고 요금 조정 시 군민 부담은 최소화하기 바람.
거창사건사업소	①거창사건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	○ 거창사건은 배·보상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입법을 촉구해 왔음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행사 승격 역시 피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인 만큼, 배·보상과 국가행사 승격을 연계하여 군·의회·지역 국회의원 등이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무적 대응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언제나 군민 곁에, 신뢰받는 거창군의회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6.9.9.)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경 제 기 업 과	1
2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9
3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살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14
4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기 업 과	19
5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24
6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32
7	거창군 아람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38
8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41
9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 략 담 당 관	47
10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 구 교 육 과	51
11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 화 예 술 과	5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 8. 14.

나. 발 의 자: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11명)

(박수자,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이홍희, 백종숙)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수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2)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3)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등(안 제6조)
- 4)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5) 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제안이유 및 제정의 타당성

- 해당 제정 조례안은 거창양수발전소 최종 유치를 위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민간 유치 활동을 적법하게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 국책사업 유치의 성패가 주민 설득과 합의에 달려있는 만큼, 민간 유치위원회의 주민 설명회·홍보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사항

- 거창군은 2024년 8월부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읍면 순회 군민 결의대회, 거리행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
- 덧붙여, 한국남부발전(주)과는 지난해 1월, 양수발전 유치 1차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7월, 2차 업무협약을 가졌으며, 양기관은 △양수발전소의 유치와 성공적인 건설 △이주민 지원사업 △양수발전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상생 발전 △지역 지원사업 공동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해당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 유치위원회의 주민 홍보·의견 수렴 등 필수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적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여 주민 설득과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군은 현 시점에서 민간 유치위원회의 주민 소통 및 공감대 형성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치 확정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과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거창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므로 해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양수발전소”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 형태의 전원설비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창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변지역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양수발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치활동 및 자원화 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거창양수발전소 유치활동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4.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5. 거창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한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사업
6. 그밖에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생노력) 군수는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공공 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 또는 단체(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유치위원회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
2. 주민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3. 관계기관, 발전사업자,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건의
4.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추진 관련 자료수집, 조사, 연구, 자문
5. 거창양수발전소 관련 교육, 견학 및 역량강화
6. 유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활동
7. 그밖에 군수가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거창양수발전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가조면장, 가북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다. 유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라. 지역발전,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수발전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인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준수) 추진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그 직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속기한) ① 유치위원회에 대한 활동 지원은 거창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준속기한은 거창양수발전소 준공일까지로 한다. 다만, 준공 이후에도 자원화 사업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하여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인 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유치위원회로 본다.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자격을 확대·개선하여 거창군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신고대상자 확대·개선함(안 제1조·제2조·제7조)
 - 가) (현행) 군 소속 공무원 ⇒ (추가) 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2) 신고자 자격 확대·개선함(안 제3조)
 - 가) (현행) 공무원 및 군민 ⇒ (확대) 누구든지
- 3) 법령 재기재, 인용 문구 등 정비함(안 제3조·제11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개정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부조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자격 제한(지역주민)을 폐지하도록 권고(의결 제2019-318호)하였음.
- 해당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 및 신고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거창군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적 근거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5조·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조례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그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 제1조·제2조에서 신고 대상을 군 소속 공무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권익위 권고사항에 부합함.
- 안 제3조에서는 신고자 자격을 종전 ‘공무원 및 군민’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것은 거주지·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제보 문호를 넓히는 조치로 타당함.

다. 주요 쟁점 검토

- 안 제3조의 신고방법의 경우 ‘그 밖에 편리한 방법’은 SNS, 전화·구두 제보 등 신고자 개인의 편의에 의존하는 주관적 표현으로, 기록 보존이 불가능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정식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우려가 있음.
- 이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관적 용어를 배제하고, 팩스·직통신고채널 등 행정 수용이 가능한 기타 수단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상위 법령에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거창군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0건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은 600만원(민간인 300만원, 공무원 300만원)으로 편성함. 향후 대형 신고 발생 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

- 해당 개정 조례안은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가 발생함에도 부조리 신고 대상에는 미포함되어 있던 것을 확대하고, 신고자 자격을 누구든지로 완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다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자는”을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부서 공무원”을 “관련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재난특별활동비를 신설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이장에게 경상남도 광역 사업인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제4조(실비 보상) 중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규정 정비, 제6조(사기진작)의 제목을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고, '복지도우미 활동비(월 1회)'와 '재난특별활동비(분기 1회, 회당 10만원)'를 지원 항목으로 신설(안 제6조제7호·제8호) 하였음.

나. 법적 근거 및 적정성 검토

- 현 정부에서는 특별재난활동비 명목으로 이장들에게 특별 수당을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추진된 사항은 없음. 현재 전국 이장과 통장수는 10만 여명으로 그간 기본수당은 20만원에서 2020년 30만원, 2024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됐고 전액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세출 예산의 비목 구분과 과목 설정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명확히 위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새로운 예산 비목을 신설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별표 4]에 이장 활동보상금 비목은 기본수당(월 40만원), 상여금(연 200%), 회의수당(회당 2만원) 3가지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음.
-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의 정책적 방침과 재정 협조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이 동시 추진하는 광역 협력 사업으로, 개정의 취지 및 도와 사전 행정 협의 과정은 타당함.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11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보상금의 07,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1. 조례에 따라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 가. 통장·이장수당
-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 나. 반장보상금: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 현재 우리군 이장은 267명이며 재난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연 40만원을 지급할 시 예산 소요액은 10,680만원이고, 매칭 비율 적용 시 도비(40%) 4,272만원, 군비(60%) 6,408만원이 소요됨.

○ 2027년 경상남도 본예산 반영 전 조례가 선행 개정되는 구조이므로, 도비 보조금이 차질 없이 교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개정 조례안은 재난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상남도 재정 지원(도비 40%)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제10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부결안의 요지 : 재난특별활동비의 법적·예산편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타 지자체의 조례·예산 편성 및 집행 추이를 지켜본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함.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회의참석수당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을 “회의참석수당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사기진작)”을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기진작”을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1회

8. 재난특별활동비: 분기 1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가. 제안이유

-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장 물품이나 안전설비 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 신설함(안 제4조)
- 2) 협력체계 구축 신설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검토내용

-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58만 6천여 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13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됨.
- 또한, 여성 자영업자는 170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해 1인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변화로 인해 단독 또는 야간 영업 시간에 절도, 사기,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음.

나. 주요 쟁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황 조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사업장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지원 대상을 보면 ‘소상공인’ 전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

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조문상 대상을 확대 규정한 사유 및 지원 대상 선정 시 형평성·특혜 시비 방지 대책 등

○ 따라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위임 범위 초과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우선순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집행 지침을 엄격히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지원방식은 '물품 장비 또는 경비 지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안전물품 지급' 및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직접 현금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 '경비 지원'의 구체적 집행 형태 확인.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제 사업 집행 시에는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게 '안전물품 지급 및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의 형태로 한정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덧붙여, 현행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예방의 경우 전문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제11조를 신설하여 거창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심사 및 처리 방향

- 법률의 하위법령 위임범위는 법률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위임하고, 그 규정을 받아들이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법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소상공인 육성을”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창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가. 제안이유

-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정비하여 거창군의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설치, 기능, 시설을 정함(안 제1조~제4조)
- 2) 입장의 제한 이용 신청 및 제한 이용 허가의 취소를 정함(안 제5조~제7조)
- 3) 이용료 기준·감면·반환, 관람료 감경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별표 1·2)
- 4) 예술가족회원제 운영, 위탁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5) 법령위배 등 삭제(현행 제12조, 제14조~제16조, 제22조·제23조)
 - 가) 사용료 특례: 기본 사용료 외에 이용자에게 관람료 수익금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부당수익에 해당-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나)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민법」 제750조 등 적용
다) 준용,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9조 등 재기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주요 검토

- 해당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던 부당 수입 추가 징수, 법률상 근거 없는 배상책임 면제 등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센터 운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 되었음.
- 검토 결과,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법정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대관자의 부담을 해소 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일부 조항에서 재량권 오남용 방지 및 상위 법령 체계 조화를 위한 명확화 작업이 요구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및 법령검토

- 개정안 제5조 제4호에 입장 제한기준의 성별영향평가 반영 및 모호성 정비
 - ☞ 법령 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 ☞ 검토 의견: 제5조제4호에 폭언·성희롱·성폭력 등 행위 요소를 명시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같은 주관적·사전적 추측 기준은 현장 집행 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행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운영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정치적 행사 이용 제한 규정의 유연성 확보

☞ 법령 근거: 「정당법」 제37조(정당의 활동의 자유),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제2항)

☞ 검토 의견: 정치적 행사를 금지하면서 「공직선거법」상 당원 집회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때 단순히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대관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례 규정은 위법·부당할 여지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정당의 정당한 정책 발표회, 학술 토론회, 주민과의 공청회 등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정당 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모두 '정치적 행사'로 묶어 차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임.

☞ 향후 공익 목적의 행사와 정당한 정당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 받지 않도록 신중한 허가 집행이 요구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독소조항 정비 및 법정 감면 반영 등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 제5조·제6조에 따른 과도한 재량권 남용 및 정치적 활동 제약이 없도록 객관적인 운영 지침 및 유연한 대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연예술 육성과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문화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
 - 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
 - 나.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 다.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등
2.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등

제4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
2.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등에 필요한 부대설비

제5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 신청 및 제한)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치적 행사(「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제외한다), 특정 종교, 개인 및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이용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이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등: 면제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행사: 면제
 3. 군 소재 초중고에서 주최하는 학예행사: 연 1회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 ③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관람료의 감경)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구
8.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0조(예술가족회원제 운영) ① 군수는 문화센터 공연예술에 대한 군민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가족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원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관람료 등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 군수는 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문화센터 이용 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예술가족회원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른 예술가족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예술가족회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가. 제안이유

- 거창아트갤러리의 수준 높은 소장품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예술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2)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을 정함(안 제2조~제6조)
- 3)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해촉, 제척·기파·회피를 정함(안 제7조~제9조)
- 4)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제정의 타당성

- 해당 제정 조례안은 거창아트갤러리의 소장품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려는 안건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조문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기금을 신설할 때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처리함이 적합한 사업은 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제3호에 기금의 용도로 '갤러리 전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및 당부사항

-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소장품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춰 용도를 소장품 구입·수집·보존 및 감정·연구 등으로 엄격히 한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5조제2호(2.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의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2호로 변경하여 기금의 용도를 소장품의 구입·수집·보존 및 감정·연구 등 소장품 확보와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함.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아트갤러리의 수준 높은 소장품 수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아트갤러리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의 수집과 갤러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2.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갤러리의 관람료 등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소장품의 수집·관리·보존
2.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의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7조(거창아트갤러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가. 제안이유

-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 역할을 해 온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장려와 문화예술도시 위상확립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함(안 제4조)
(현행) 2026년 12월 31일 ⇒ (연장) 2031년 12월 31일
- 2)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려는 안건임.

- 아림예술제는 1996년 기금 설치 이후 거창군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세부 조문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은 상위 법령상 최대 설정 범위(5년 이내)에 부합하고, 위원 해촉 조문 정비(안 제9조) 및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가. 제안이유

- 거창박물관의 무료관람, 박물관자료의 이용, 시설의 대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박물관의 관람 및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위치,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제3조)
- 2) 관람료, 이용료, 대관료가 무료임을 명시함(안 제4조의2)
- 3) 박물관자료의 이용을 정함(안 제4조의3)
- 4) 서식이나 업무절차 등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제7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 5) 입장제한 사유 추가함(안 제8조)
- 6) 시설의 대관, 대관의 제한·신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개정의 타당성

-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람료·이용료·대관료의 무료화 명시, 박물관자료 이용 및 시설 대관 기준 신설, 서식의 규칙 위임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 취지는 타당함.

나. 세부 조문별 검토 및 법령검토

- 안 제8조 제6호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제7호의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사전적·주관적 추측 기준으로서 현장 집행 시 과도한 재량권 남용 및 관람객과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객관적 행위' 중심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는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학술 및 문화예술행사 등에 대한 시설 대관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시설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실제 대관 결정은 대관을 신청하는 민원인(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대관의 신청·승인 절차 및 심사 기준을 세부 지침이나 하위 규정으로 명확히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해당 개정 조례안은 관람료 및 대관료 무료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다만, 앞서 지적한 세부 조문의 법적·행정적 미비점에 대해서 객관적 행위 기준 중심의 세부 집행지침 수립, 대관 심사 기준의 하위규정 구체화 등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수장고(收藏庫)
2. 특별전시실, 강당, 야외전시장 등

③ 박물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3에 둔다.

제3조 조 제목 “(개관 및 휴관)”을 “(휴관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추석날”을 “추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 홈페이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람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를 무료로 한다.

1. 관람료
2. 제4조의3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이용료
3. 제11조에 따른 시설 대관료

제4조의3(박물관자료의 이용)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기증증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관리 및 점검)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 대장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박물관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설의 대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貸館)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유산 보존·보급·전승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학문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설의 대관 시간은 제4조에 따른 박물관 관람시간에 따르며, 그 밖의 시간에 대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대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2. 대관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치적 행사(「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는 제외한다), 특정 종교, 개인 및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의 신청 등) ①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관 목적 등을 검토한 후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12.31. 만료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인력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 탁 명: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2) 위 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농업근로자 기숙사 1층)
- 3) 위탁사무
 - 가)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농업인력 근태 및 인력 배치 관리

- 나) 농업인력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다)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라)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사업
- 마)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4)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2026년 예산 150백만원)
- 5) 위탁방법: 공개모집
- 6)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7) 소요예산: 150백만원(2026년 기준),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변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제안이유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해당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임.
-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기존 인력중개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연계·통합 관리하여 인력 수급의 현장 대응력과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위탁 근거의 적정성, 사업 수행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 및 예산 반영 구조 등 행정절차 전반이 법적 요건을 충족함.

나. 종합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 농업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탁기관 모집 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연계에 따른 거창군과 수탁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협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

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 소 년 활 동 시 설 민 간 위 탁 동 의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나) 위 치: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다)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3,901.43㎡	지상2층 / 898.12㎡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9동 / 386.02㎡
근무인원	9명	5명	3명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9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인관, 안내데스크, 휴게실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탐험관, 교육체험실	
	3층	직원숙소	옥상	천체관측관	

2)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일까지(3년간)

3) 위탁사무 및 조건

구 분	위탁사무 및 조건	비 고
거창월성 청소년수련원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시설의 개·보수 중 거창군에서 심사·결정한 사항 지원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거창월성 우주창의과학관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거창국민여가 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운영비 지원(시설운영,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람료 징수,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징수

4) 수탁자 자격사항

- 수탁자격: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5) 선정방법: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제안이유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해당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전임.
- 법령상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청소년 전문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사항

- 2026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에 294,000천원, 수련원 분전반 교체, 캠핑장 노후데크 교체, 과학관 체험시설 보수공사 등에 121,5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이에, 운영비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일상 유지보수비'와 군에서 직접 부담하는 '대수선(개·보수) 비용'의 기준(금액 한계선 등)을 위·수탁 협약서에 명확히 하여 경미한 시설 보수는 수탁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요구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청소년 전문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가. 제안이유

- 1)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 무형 유산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 및 군민 대상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 추진에 필요한 거창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시 설 명: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 2) 위 치: 거창읍 수남로 2193-34

3) 주요시설

구분	전수교육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문화집회시설 (창고)	야외공연장
	지하 1	지상 1					
1,224.47㎡	141.6㎡	679.5㎡	57.6㎡	40.5㎡	32.4㎡	173.16㎡	119.71㎡

4) 위탁대상 사무

- 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
- 나) 무형유산의 교육, 회원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다) 전수교육관 시설물 및 비품관리 위탁, 사용료 관리
- 라)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탁기간: 2026. 12. 19. ~ 2029. 12. 18.(3년)

6) 위탁방법: 공개모집

7) 선정방법: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류 및 면접 심사)

8) 소요예산: 금163,580천원(2026년 기준) / 연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제안이유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해당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창 전수교육관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으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함.

나. 주요 검토사항

- 공개모집 방식임에도 관련 전문 단체의 폭이 좁아 특정 주체의 장기 수탁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자율성 저하와 실질적 경쟁 부재가 우려됨.

- 현 수탁단체의 전문성과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형유산의 미래지향적 전승과 청년 전승자 육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관리 기준 정립 등 행정적 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26년 민간위탁금 163,580천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123,387천원이 대부분 인건비에 집중되어 있어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관리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과 후속 정산 검사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및 조치 요구사항

-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과 무형유산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조 례 안 ·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 업 소 득 과	1
2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환 경 과	6
3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환 경 과	9
4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건 설 교 통 과	12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9.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의결일: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소득과장 곽철식]

가. 제안이유

○ 농업기계 운송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현장까지 운송
및 회수하는 운송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운송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2) 운송 지원에 따른 반환 등 정비함(안 제9조·제10조·제11조)
- 3) 임대료 감면대상 정비함(안 제11조·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
기계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군이 농기계

운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편도 15,000원의 운송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와 운송료의 징수·반환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중심으로 북부권, 수송대권, 동부권, 남부권 등 5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5기종 1,325대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경남도 내 농기계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거창군이 가장 임대 실적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단위: 건)

시·군	거창군 ①	합천군 ②	진주시 ③	하동군 ④	김해시 ⑤	고성군 ⑥	창녕군 ⑦	양산시 ⑭
임대실적	15,807	8,660	7,944	7,721	7,572	6,715	6,525	932

- 또한, 우리군 최근 3년간 임대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건, 백만원, 일)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건수	금액	일수	건수	금액	일수	건수	금액	일수
실적	15,807	324	19,997	14,776	303	16,600	13,158	270	16,600

- 농기계는 종류에 따라 차량 운반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임대 농기계를 직접 운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군이 농기계를 임차 농가까지 운송하고 회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인의 운송수단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단순한 장비 대여가 아닌 농작업 지원서비스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같은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에 따라 군수는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
- 해당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운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신청을 받고 신청순서에 따라 임대료(제9조의2에 따른 운송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운송 지원) ①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농기계 운송(이하 “운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운송 가능여부·일정 등을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할 것
2.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
3.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

③ 군수는 편도 1만5천원의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송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조 제목 “(임대료)”를 “(임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기계의 임대료는”을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를”로 하고 “결정하여 매년”을 “결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료”를 “임대료 및 운송료”로 한다.

제11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조 제목 “(임대료의 반환)”을 “(임대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임대료”를 “임대료 및 운송료”로 하며 “한다.”를 “한다. 다만, 제4호는 임대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

제4호 중 “농업기계”를 “농기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지원 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9.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의결일: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박승진]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
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규모	위탁관리비	현 운영업체	비고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 면적: 1,855m(3층, 철골) ▶ 용량: 30톤/일 ▶ 방식: 열분해가스화방식	2,639 (26년 위탁비)	(공동수급) (주)넥스트워터 55% 금강엔지니어링 45%	관리인원 19명

○ 민간위탁 내용

1) 위탁사무: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2)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단, 거창군 신설 소각시설(스토커형) 준공 시 까지

3) 선정방법: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4) 수탁자격: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20톤/일 이상의 열분해 가스화 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법인)
 - 수탁자의 기술 능력, 재정 상태, 적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선정

○ 소요예산: 2,782백만원 정도 (2026년도 원가산정 용역 결과)

- 고정비: 1,451백만원 / 변동비: 702백만원 / 제경비: 629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이번 동의안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제1호(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시기상 문제는 없음.

- 해당 사업은 단순 노무가 아닌 전문적인 행정·공공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함에 따라, 단순 가격 입찰보다는 사업 제안서 평가와 협상 절차를 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택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여짐.
 - 「지방계약법」 제4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반적인 행정시설과 달리 소각로 운전, 대기오염 방지시설, 환경오염물질 측정·관리, 시설 유지 보수 등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시설임.
- 또한, 시설 특성상 24시간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 인력 확보와 교대근무 체계가 필요하므로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9.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의결일: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박승진]

가. 제안이유

○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재계약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 탁 명: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운영

2) 사 업 장: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6-6번지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단 사업장 지내)

3) 위탁사무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시설 운영·관리
- 다회용기 대여 및 회수, 세척, 공급 운영 등

4) 재계약기간: 3년(2027. 1. 1. ~ 2029. 12. 31.)

5) 위탁사업자: 경남 거창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사업 에코워싱사업단 연계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이 가능

바. 소요예산: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해당 사업은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대여·회수 하고 세척하여 다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세척시설 운영과 차량·장비 관리, 위생관리 및 신속한 회수·공급체계가 필요한 업무임.
- 특히, 현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은 어린이집 식판 등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3년에는 세척시설 및 다회용기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한 후 2024년부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 시설과 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기존 수행기관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성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9.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라. 상정·의결일: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2026. 8.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가. 제안이유

-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주차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업: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2) 위탁사무
 -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차장명	소 재 지	주차면수	면적(㎡)
소계	2개소	86면	2,481
노상공영주차장	북부사거리 ~ 중앙교 일원	36면	528
거점공영주차장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50면	1,953

- 유료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 3) 위탁기간: 2026. 11. ~ 2029. 11.
- 4)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입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해당 동의안은 북부사거리~중앙교 일원의 노상공영주차장 36면과 거창읍 대동리 거점공영주차장 50면 등 2개소, 총 86면의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임.
- 수탁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대상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동의안은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회전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공개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은 경쟁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